

1.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시·도 소방본부부터 소방체험관까지의 1, 2차 평정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속	계급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시·도 소방본부	소방정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부분부장	소속 시군 부시장, 부지사 또는 소방본부장. 다만, 지방소방학교장의 경우에는 차장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별표 1의 시·도 소방본부의 2차 평정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속	계급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시·도 소방본부	소방령 및 소방경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부분부장
소방서		소속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119특수대응단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		소방체험관장	

별표 1의 시·도 소방본부의 2차 평정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속	계급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시·도 소방본부	소방위 이하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부분부장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평정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평정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나.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6. 통합특별시의 경우 소방청 계급의 1차 평정자를 시·도의 소방부분부장으로 지정하고 이 경우 2차 평정자는 소속 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이 된다. 소방령 이하의 경우 2차 평정자를 시도 소방부분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 11.>

근무성적의 평정자(제6조 관련)

소속		계급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소방청	관 · 국	소방정	소속 국장	차장
	관 · 국 외		소속 과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장	차장
시 · 도 소방본부			소속 시 · 도 소방본부장, 소방부분부장	소속 시군 부시장, 부지사 또는 소방본부장. 다만, 지방소방학교장의 경우에는 차장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소방청	관 · 국	소방령 및 소방경	소속 과장	소속 국장
	관 · 국 외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령	국립소방연구원장	차장
		소방경	소속 과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시 · 도 소방본부		소방령 및 소방경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시 · 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부분부장
소방서			소속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119특수대응단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			소방체험관장	
소방청	관 · 국	소방위 이하	소속 과장	소속 국장
	관 · 국 외			차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장
시·도 소방본부	소방위 이하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부분부장
소방서		소속 부서장(과장, 안전 센터장, 구조대장). 다만, 본인이 부서장인 경우에는 해당 소방서의 인사 주무과장(소방행정과장)	소속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119특수대응단		소속 부서장(과장 등)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방체험관장

비고

1. “관·국 외”란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119종합상황실, 청장실, 차장실,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2. “소속 국장”에는 기획조정관을, “소속 과장”에는 대변인, 담당관, 실장, 팀장·구조대장·센터장 등 과장급 부서장을 포함한다.
3. 청장실 및 차장실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소속 과장으로 본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평정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평정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 나.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소방정 계급 소방공무원의 1차 평정자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라 소방준감으로 보하는 소방 담당 과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차 평정자는 소속 시·도의 소방본부장이 된다.
6. **통합특별시의 경우 소방정 계급의 1차 평정자를 시·도의 소방부분부장으로 지정하고 이 경우 2차 평정자는 소속 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이 된다. 소방령 이하의 경우 2차 평정자를 시도 소방부분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